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전재수·최인호·박재호

이병훈ㆍ허 영ㆍ김정호

고영인 · 이장섭 · 김홍걸

김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,8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,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 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
그러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.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,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임.

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(안 제102조의4 및 제102조의5 신설).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의4 및 제10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2조의4(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손의료보험(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)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(이하 "전문중계기관"이라 한다)에 위 탁할 수 있다.
 - ③ 전문중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보험회사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 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시설·장비 등에 관한 기준,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제102조의5(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명서류

전송 요청) ①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대리인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양기관으로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의료비 증명서류의 종류·내용, 요청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2조의4(실손의료보험계약의
	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
	축·운영 등) ① 보험회사는 보
	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
	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
	실손의료보험(보험계약자 등이
	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
	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)
	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편
	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
	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
	<u>있다.</u>
	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
	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
	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중계기관(이하 "전문중계기
	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전문중계기관은 제2항에 따
	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
	위하여 보험회사 및 「국민건
	<u>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</u>
	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 한

<신 설>

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시설·장비 등에 관한 기준,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2조의5(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 명서류 전송 요청) ① 보험계 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 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 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 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의 의료비 증명서류의 종류·내용, 요청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